

대구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시복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5986
----------	------

발의년월일 : 2021. 06. 04.

발의의원 : 이시복, 강성환, 김규학,
김동식, 김지만, 김태원,
김혜정, 박갑상, 안경은,
윤영애, 이만규, 이진련,
임태상, 전경원, 황순자
의원(이상 15명)

1. 제안이유

- 상위법인 「장애인복지법」,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에 따라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과 관련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
무 대상이 중증장애인에서 장애인으로 확대되었고, 용어가 변경된
부분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 조례의 제명을 변경함으로써 장애인 자립생활지원과 관련한 지방자치
단체의 책무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 의지를 표명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제명을 「대구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에서 「대구
광역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로 변경하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 의지를 표명함.

- 나. 용어의 정의를 상위법에 맞게 규정함(안 제2조)
- 다. 자립생활지원 내용과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권익옹호와 관련한 내용을 추가함(안 제5조)
- 라.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를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로 변경함(안 제7조)
- 마. 자립생활가정 심의위원회를 자립생활주택 입주선정위원회로 변경함(안 제13조)

3. 참고사항

- 가.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1 참조
- 나. 관계법령 : 붙임2 참조
- 다. 예산조치 : 관계부서와 협의 필요
- 라. 기 타

대구광역시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구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를 “대구광역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이 스스로 삶을 선택하고 결정하여 지역사회 일원으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자립생활”이란 장애인 스스로가 삶을 선택하고 타인에 대한 의존을 최소화하면서 지역사회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회적 역할을 주체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3. “활동지원급여”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활동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른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4.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란 법 제54조에 따라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센터를 말한다.

5. “동료상담”은 법 제56조에 따라 장애인이 역량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장애동료 간 상호대화나 상담 및 역할모델 등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6. “자립생활주택”이란 자립의지가 있는 거주시설 거주 또는 퇴소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동안 거주하면서 지역사회 내 일상생활 및 사회적응을 체험하는 주거공간을 말한다.
7. “시설”은 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을 말한다.

제3조 중 “중증장애인”을 “장애인”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거주하거나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생활시설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과 그 친족, 후견인 등 기타 관계인은”을 “거주하는 장애인 및 보호자는”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자립생활지원)”을 “(자립생활지원 내용)”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증장애인”을 “장애인”으로, “다음”을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부터 제10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2. 장애인 동료상담 및 역량강화
3. 장애인 자립생활에 필요한 교육·홍보
4. 장애인 주거지원 및 개·보수
5. 장애인 보장구 지원 및 수리
6. 직업훈련 및 구직 연계
7. 장애가정에 대한 출산 및 육아
8.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역사회연계
9. 장애인 권익옹호
10. 그 밖에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

제3장의 제목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의 운영”을 “장애인자립

생활지원센터” 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운영)” 을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를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로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2항 중 “중증장애인” 을 각각 “장애인” 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장애인활동보조 추가지원)” 을 “(활동지원급여 추가지원)”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장애인활동지원법” 을 “장애인활동법” 으로, “중증장애인” 을 “장애인” 으로, “활동보조서비스를 추가지원하여야 있다” 를 “활동지원급여를 추가로 지원하여야 한다”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장애인활동지원법” 을 “장애인활동법” 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증장애인” 을 “장애인” 으로 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제13조의 제목 “(자립생활가정 제공)” 을 “(자립생활주택 제공)” 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중증장애” 를 “장애” 로, “완전한 정착” 을 “정착” 으로, “자립생활가정” 을 “자립생활주택” 으로 하며,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자립생활가정 심의위원회에서” 를 “자립생활주택 입주선정위원회에서” 로, “자립생활가정 심의위원회의” 를 “자립생활주택 입주선정위원회의” 로, “규칙으로” 를 “시장이 별도로”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대구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u> <u>지원 조례</u>		<u>대구광역시 장애인 자립생활</u> <u>지원 조례</u>		
<p><u>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이</u> <u>이 지역사회</u>의 일원으로서 자립생활을 통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u>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에</u>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이 스스로 삶을 선택하고 결정하여 지역사회 일원으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u>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u></p> <p>1. “중증장애인”은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중증장애인으로 한다.</p> <p>2. “자립생활”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결정하고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영위해 나</p>		<p><u>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u></p> <p>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p> <p>2. “자립생활”이란 장애인이 스스로가 삶을 선택하고 타인에 대한 의존을 최소화하면서 지역사회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회적</p>		

가는 것을 말한다.

3. “활동보조서비스”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활동지원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제1호에 의한 활동지원급여를 말한다.

4.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는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에 따라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권익옹호 활동을 하는 비영리법인·단체를 말한다.(개정 2012. 12. 31 조례 제4454호)

5. “동료상담”은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권익옹호를 위해 장애인 상호 간에 필요한 정보와 경험을 제공하는 상담 활동을 말한다.

6. “자립생활체험홈”은 자립생활을 필요로 하는 중증장애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를 지원하여 이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자립생활을 체험하게 하는 임시주

역할을 주체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3. “활동지원급여”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활동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른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4.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란 법 제54조에 따라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센터를 말한다.

5. “동료상담”은 법 제56조에 따라 장애인이 역량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장애동료 간 상호대화나 상담 및 역할모델 등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6. “자립생활주택”이란 자립의지가 있는 거주시설 거주 또는 퇴소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동안 거주하면서 지역사회 내 일상생활 및 사회적응을 체험하는 주거공간을 말한다.

거공간을 말한다.

7. “자립생활가정”은 시설퇴소 중증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지역사회에서 일상생활에 대한 자원을 연계하여 지원하고 지역사회에 완전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주거공간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시책과 예산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자립생활지원 신청) ①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생활시설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과 그 친족, 후견인 등 기타 관계인은 시장에게 자립생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생략)

제5조(자립생활지원) 시장은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7. “시설”은 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
----- 장애인-----

-----.

제4조(자립생활지원 신청) ① -----

----- 거주하는 장애인 및 보호자는 -----

-----.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자립생활지원 내용) ----- 장애인-----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

1. 장애인활동보조 지원
2. 장애동료간 상담 지원
3. 장애인자립생활 지원

4. 장애인 주거편의시설 개선
5. 보장구수리, 개조 및 부품 지원
6. 취업을 희망하는 장애인을 위한 직업훈련 및 구직 연계서비스
7. 장애가정에 대한 출산 및 육아 서비스
8.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역사회연계서비스
9. 그 밖에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장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의 운영

제7조(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운영) ①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장은 장애인을 우선으로 하며 센터의 장 이외의 직원 중 1인 이상은 장애인이어야 한다.

②·③ (생략)

1.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2. 장애인 동료상담 및 역량강화
3. 장애인 자립생활에 필요한 교육·홍보
4. 장애인 주거지원 및 개·보수
5. 장애인 보장구 지원 및 수리
6. 직업훈련 및 구직 연계
7. 장애가정에 대한 출산 및 육아
8.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역사회연계
9. 장애인 권익옹호

10. 그 밖에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

제3장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제7조(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 ①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

②·③ (현행과 같음)

제9조(센터의 의무) ① 센터의 장은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과 복지 증진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장은 사업운영을 위한 관계 법령과 규정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중증장애인의 인권신장과 권익옹호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장애인활동보조 추가지원)

① 시장은 장애인활동지원법에 의한 활동지원급여 외에도 장애 정도나 그 밖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활동보조서비스를 추가지원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군수는 시장이 정하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의 신청을 받아 장애인활동지원법 제8조에 의한 구·군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서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시장에게 그 명단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시설폐소 및 전환지원) ①

제9조(센터의 의무) ① -----
장애인-----

-----.

② -----

----- 장애인-----

-----.

제10조(활동지원급여 추가지원)

① ----- 장애인활동법-----

----- 장애인
----- 활동지
원급여를 추가로 지원하여야 한다.

② -----

----- 장애인활동법 -----

-----.

제11조(시설폐소 및 전환지원) ①

시장은 자립생활을 위하여 시설
폐소를 희망하는 중증장애인에게
필요한 정착금의 지원대책을 마
련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④ 시장은 시설폐소 및 지역사회
전환지원을 희망하는 중증장애인
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
을 제공하거나 지원하여야 한다.

1. ~ 3. (생략)

⑤ (생략)

제12조(자립생활체험홈) 시장은 자
립생활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중증장애인이 독립생활을 희망하
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거주하면
서 자립생활을 경험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자립생활체험
홈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제13조(자립생활가정 제공) 시장은
시설폐소 중증장애인 등이 희망
하는 경우 지역사회로의 완전한
정착을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거
주할 수 있는 자립생활가정을 운

----- 장애인-----

-----.

②·③ (현행과 같음)

④ -----
----- 장애인

-----.

1. ~ 3.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삭제>

제13조(자립생활주택 제공) -----
----- 장애-----
----- 정착

----- 자립생활주택-----

영한다. 다만, 대상자는 자립생활
가정 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결정하고 자립생활가정 심의위원
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 ----- 자립생활
주택 입주선정위원회에서 -----
----- 자립생활주택 입주
선정위원회의 -----
시장이 별도로 ----- .

(붙임 2)

관 계 법 령

「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 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③ “장애인학대”란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2. 10. 22., 2015. 6. 22.>

제53조(자립생활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자기결정에 의한 자립생활을 위하여 활동지원사의 파견 등 활동보조서비스 또는 장애인 보조기구의 제공, 그 밖의 각종 편의 및 정보제공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9., 2018. 12. 11.>

제54조(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를 통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개정 2017. 12. 19.>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7. 12. 19.>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또는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5. 12. 29., 2017. 12. 19.>

[제목개정 2017. 12. 19.]

제55조(활동지원급여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활동지원급여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 1. 4., 2017. 12. 19.>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 등으로 인하여 이동이 불편한 여성장애인에게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한 진료 등을 위하여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감안하여 활동지원사의 파견 등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1.>

③ 삭제 <2011. 1. 4.>

[제목개정 2011. 1. 4.]

제56조(장애동료간 상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장애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장애동료 간 상호대화나 상담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애동료 간의 대화나 상담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제58조(장애인복지시설) ①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3. 30.>

1. 장애인 거주시설: 거주공간을 활용하여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거주·요양·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생활을 지원하는 시설
2.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상담·치료·훈련하거나 장애인의 일상생활,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활동 등을 지원하는 시설
3.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
4.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장애인을 입원 또는 통원하게 하여 상담, 진단·판정, 치료 등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구체적인 종류와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3. 30., 2013. 6. 4., 2015. 12. 29.>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활동지원급여”란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3. “수급자”란 제9조제2항에 따라 수급자로 인정되어 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예정이거나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활동지원사업”이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 법에 따라 수행하는 활동지원급여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5. “부양의무자”란 수급자(제6조제1항에 따른 신청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자의 1촌 이내 직계 혈족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 및 그 밖에 수급자의 생계를 책임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6. “활동지원기관”이란 제20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수급자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7. “활동지원인력”이란 활동지원기관에 소속되어 수급자에 대한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16조(활동지원급여의 종류 등) ① 이 법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3. 30., 2015. 12. 29., 2018. 12. 11.>

1. 활동보조: 활동지원인력인 제27조에 따른 활동지원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이동보조 등을 지원하는 활동지원급여
2. 방문목욕: 활동지원인력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
3. 방문간호: 활동지원인력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이하 “방문간호지시서”라 한다)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

4. 그 밖의 활동지원급여: 야간보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지원급여

② 수급자가 활동지원급여를 받거나 활동지원기관이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5. 12. 29.>

1. 수급자가 아닌 그 가족을 위한 활동보조(신체활동 지원, 가사활동 지원, 사회활동 지원 등)·방문목욕·방문간호 등의 행위
2.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직장 등에서 생업을 지원하는 활동보조 행위
3. 수급자의 자립생활에 지장이 없어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행위

③ 그 밖에 활동지원급여의 제공 기준·절차·방법·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2. 29.>